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6. 9.

경제문화전문위원

목 차

Ⅰ.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총괄 ····· 1

Ⅱ. 경제산업국 ····· 15

Ⅲ. 투자유치단 ····· 49

Ⅳ. 도농상생국 ····· 61

Ⅴ. 농업기술센터 ····· 93

Ⅵ. 문화체육관광국 ····· 101

Ⅶ. 시설관리사업소 ····· 121

※ 본 보고서에 포함된 수치는 천원단위 반올림에 따라 항목별 합계와 총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총괄

Ⅰ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총괄

제1장 세종시 일반 현황

1. 기본현황

(단위: ㎢, 개, 명)

면적	시·군·구	행정구역			전년도 인구수		현년도 인구수	
		읍면동	리·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464.99	1	24	595	3,352	163,432	396,867	165,220	398,536

2. 행정조직

(단위: 개소, 명)

본청		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 수
실.국.본부	담당관.실.과						
11	55	1	2	5	7	24	2,612

3. 공무원 현원

(단위: 명)

계	지 방 직				국가직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2,559	1,989	-	4	8	558*

* 행정부시장(1), 기획조정실장(1), 소방공무원(556)

제2장 회계 현황

□ 현황

세종특별자치시의 회계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6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및 **기금 14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 현황 >

회 계	종 류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일 반 회 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 방 공 기 업 특별회계	상 수 도 사 업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 공급
	하 수 도 사 업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
	공영개발사업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

회 계	종 류	설치 근거	설치 목적
기 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수행
	주 택 사 업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①「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주택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
	도 시 개 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 '25.3.7. 폐지
	기 반 시 설 부 담 구 역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확보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학 교 용 지 부 담 금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소 방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사무와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수 질 개 선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함
	광역교통시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 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및 운용·관리
	자 치 분 권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 및 운용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개발사업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국방·군사시설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 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설치 및 운용
	교 통 사 업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 및 운용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관리·운용 ※ '25.1.1. 신설
	공공급식지원센터 대 행 료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용 ※ '25.1.1. 신설

회 계	종 류	설치 근거	설치 목적
기 금	자 활 기 금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식품진흥기금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사업 지원
	폐기물 처리 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과 주변 거주 주민 지원
	농 업 발 전 기 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관리·운용
	재난관리기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재난의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해구호기금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이재민 구호 및 재해피해자의 보호와 생활 안전에 기여
	투자진흥기금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국내기업 등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
	양성평등기금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 실현
	지역개발기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
	남북교류협력 기 금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세종시와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옥외광고발전 기 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통합재정안정화 기 금 (통 합 계 정)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한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설치 및 운용
	통합재정안정화 기 금 (재정안정화계정)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한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설치 및 운용
	고향사랑기금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역 주민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 및 분석

1. 세입·세출결산 요약

□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결과 **세입**(실제 수납액)은 **2조 4,096억원, 세출**(지출액)은 **2조 2,59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653억원**입니다.

(단위: 억원)

구 분	예산현액 (A)	세 입 (수납액) (B)	세 출 (지출액) (C)	결산상 잉여금						
				계 (B-C)	다음연도 이월액 (D)	보조금 실제반납금(E)			지정재원잉여금 (F)	순세계잉여금 (B-C-D-E-F)
						합계	보조금 반납금	교부차액		
2025년 (Ⅰ)	**2조 3,826**	**2조 4,096**	**2조 2,594**	**1,502**	**763 (17)**	**83**	**73**	**10**	**3**	**653**
일반회계	**2조 60**	**2조 284**	**1조 9,125**	**1,159**	**580 (17)**	**82**	**72**	**10**	**3**	**494**
특별회계	**3,766**	**3,812**	**3,469**	**343**	**183**	**1**	**1**	**-**	**-**	**159**
공기업	1,516	1,583	1,293	290	160	-	-	-	-	130
기 타	2,250	2,229	2,176	53	23	1	1	-	-	29
2024년 (Ⅱ)	**2조 2,467**	**2조 2,558**	**2조 851**	**1,707**	**959**	**74**	**61**	**13**	**-**	**674**
증감 (Ⅰ-Ⅱ)	1,359	1,538	1,743	△205	△196	9	12	△3	3	△21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 안에 별도 표시

□ **순세계잉여금**은 **653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억원)

과목	2025 순세계잉여금(Ⅰ)			2024 순세계잉여금(Ⅱ)			증감액(Ⅰ-Ⅱ)		
	계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계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계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합계	**653**	267	386	**674**	92	582	**△21**	**175**	**△196**
일 반 회 계	**494**	**221**	**273**	**604**	**119**	**485**	**△110**	**102**	**△212**
특 별 회 계	**159**	**46**	**113**	**70**	**△27**	**97**	**89**	**73**	**16**
공 기 업	130	68	62	46	4	42	**84**	**64**	**20**
기 타 특 별 회 계	29	△22	51	24	△31	55	**5**	**9**	**△4**

* 초과세입금은 지정재원잉여금이 차감되어 있음

** 세입결산(수납액)이 기준이므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미포함하고, 보조금 초과수령액은 포함하므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예산현액 기준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보조금 초과수령액 미포함)과는 금액이 상이함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증감률
예산현액(계)		2조 3,618	2조 3,217	2조 4,104	2조 2,467	2조 3,826	0.4
일반회계		1조 8,117	1조 9,109	1조 9,321	1조 8,255	2조, 60	2.7
특별회계		5,501	4,108	4,783	4,212	3,766	△7.9
세 입(A)		2조 4,966	2조 3,505	2조 4,130	2조 2,558	2조 4,096	△0.9
세 출(B)		2조 ,834	2조 1,064	2조1,632	2조 ,851	2조 2,594	2.0
잉여금 (A-B)	소 계	4,132	2,441	2,498	1,707	1,502	△22.4
	다음년도이월액	1,825	1,465	1,640	959	763	△19.6
	보조금실제반납금	74	151	73	74	83	2.8
	지정재원잉여금	-	-	-	-	3	-
	순세계잉여금	2,233	825	785	674	653	△26.5

2. 세입·세출결산 분석

□ (세입결산) 세입결산액은 2조 4,09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0억원이 많고, 전년대비 1,5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 (실제 수납액) (C)	차액 (C-A)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비율 (C/B)
2025년 (Ⅰ)	2조 3,826	2조 4,878	2조 4,096	270	27	755	101.1	96.9
일반회계	2조 60	2조 918	2조 284	224	25	609	101.1	97.0
특별회계	3,766	3,960	3,812	46	2	146	101.2	96.3
2024년 (Ⅱ)	2조 2,467	2조 3,298	2조 2,558	91	23	717	100.4	96.8
증감 (Ⅰ-Ⅱ)	1,359	1,580	1,538	179	4	38	0.7	0.1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결산액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	전년 대비
계	**2조 4,130**	**2조 2,558**	**93.5**	**2조 4,096**	**106.8**
자 체 수 입	**1조 ,570**	**1조 ,620**	**100.5**	**1조 1,106**	**104.6**
지방세수입	7,764	8,500	109.5	8,768	103.2
세 외 수 입	2,806	2,120	75.6	2,338	110.3
이 전 수 입	**5,858**	**5,898**	**100.7**	**7,471**	**126.7**
지방교부세 등	1,658	1,412	85.2	1,528	108.2
보 조 금	4,200	4,486	106.8	5,943	132.5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등	**7,702**	**6,040**	**78.4**	**5,519**	**91.4**

□ (세출결산) 세출결산액은 2조 2,594억원으로 전년대비 1,743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집행률은 94.8%(전년대비 2.0% 증가)입니다.

< 세출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연 도 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잉여금					
				차년도 이월액 (C)	C/A	보조금 반납금 (D)	D/A	집행잔액 (E=A-B-C-D)	E/A
2025년(Ⅰ)	**2조3,826**	**2조 2,594**	**94.8**	**780 (17)**	**3.3**	**73**	**0.3**	**379**	**1.6**
일반회계	2조 60	1조 9,125	95.3	597 (17)	3.0	72	0.4	266	1.3
특별회계	3,766	3,469	92.1	183	4.9	1	0.1	113	3.0
2024년(Ⅱ)	**2조2,467**	**2조 851**	**92.8**	**959**	**4.3**	**61**	**0.3**	**596**	**2.7**
증감(Ⅰ-Ⅱ)	**1,359**	**1,743**	**2.0**	△179	△1.0	12	-	△217	△1.1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회 계 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출결산액	전년 대비	세출결산액	전년 대비
계	**2조 1,632**	2조 ,851	**96.4**	**2조 2,594**	**108.4**
일 반 회 계	1조 7,361	1조 6,985	97.8	1조 9,125	112.6
특 별 회 계	4,271	3,866	90.5	3,469	89.7
공기업특별회계	1,753	1,372	78.3	1,293	94.2
기타특별회계	2,518	2,494	99.0	2,176	87.2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세부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출액	지출액	전년대비	지출액	전년대비
계	**2조 1,632**	**2조 851**	**96.4**	**2조 2,594**	**108.4**
일 반 회 계	**1조 7,361**	**1조 6,985**	**97.8**	**1조 9,125**	**112.6**
일반공공행정	1,373	1,411	102.8	2,170	153.8
공공질서및안전	979	1,009	103.1	1,015	100.6
교육	929	930	100.1	1,015	109.1
문화및관광	975	840	86.2	779	92.7
환경	861	723	84.0	714	98.8
사회복지	5,073	5,417	106.8	5,558	102.6
보건	438	373	85.2	395	105.9
농림해양수산	927	982	105.9	1,020	103.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61	507	76.7	1,660	327.4
교통및물류	1,261	1,226	97.2	1,525	124.4
국토및지역개발	1,941	1,499	77.2	1,016	67.8
과학기술	90	84	93.3	99	117.9
기타(인건비, 기본경비)	1,853	1,984	107.1	2,159	108.8
특 별 회 계	**4,271**	**3,866**	**90.5**	**3,469**	**89.7**
공기업특별회계	1,753	1,372	78.3	1,293	94.2
기타특별회계	2,518	2,494	99.0	2,176	87.2

제4장 기금결산 요약 및 분석

□ 2025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540억원**으로 **전년 7,179억원 대비 639억원(8.9%) 감소**하였습니다.

○ 2025년도 조성액은 1,305억원이며 사용액은 1,944억원입니다.

< 연도말 기금조성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	2025년도 증감액			2025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717,942**	△63,942	**130,469**	194,411	654,000
자활기금	1,054	85	145	60	1,139
식품진흥기금	1,884	34	112	78	1,91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82	4	205	201	86
농업발전기금	20,259	806	9,425	8,619	21,065
중소기업육성기금	3,301	△1,398	71	1,469	1,903
재난관리기금	19,784	△3,847	8,412	12,259	15,937
재해구호기금	14,986	4,191	4,423	232	19,177
투자진흥기금	23,025	△860	476	1,336	22,165
양성평등기금	402	114	707	593	516
지역개발기금	226,431	△12,575	38,312	50,887	213,856
남북교류협력기금	1,227	15	28	13	1,242
옥외광고발전기금	849	△472	251	723	3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4,266	△50,286	67,444	117,730	353,980
통합계정	396,344	△42,490	67,346	109,836	353,854
재정안정화계정	7,922	△7,796	98	7,894	126
고향사랑기금	392	247	458	211	639

제5장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

□ 재무회계 결산

○ **총자산은 9조 6,582억원**이고 **총부채는 5,721억원**이며, **순자산 규모는 9조 861억원**으로 **전년 대비 836억원(0.9%) 감소**하였습니다.

○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제외한 **재정운영 결과는 303억원**으로, **전년대비 4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요약 >

(단위 : 억원, %)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A)	총부채(B)	비율	순자산(A-B)	총비용(C)	총수익(D)	운영결과(C-D)
2025년	**9조 6,582**	**5,721**	**5.9**	**9조 861**	**2조 166**	**1조 9,863**	**303**
2024년	9조 7,277	5,580	5.7	9조 1,697	1조 7,573	1조 6,839	734
증 감	△695	141	0.2	△836	2,593	3,024	△431

□ 재정상태 분석

○ **자산은 9조 6,582억원으로 전년대비 695억원(0.7%) 감소**하였습니다.

- 유동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감소
- 행복도시 공공시설 인수(4生 공원, 환승주차장 등), 도시숲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의 증가

<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3		2024		202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9조 5,700	100	9조 7,277	100	**9조 6,582**	**100**
유동자산	4,809	5.0	3,767	3.9	3,054	**3.1**
투자자산	966	1.0	1,163	1.2	1,159	**1.2**
일반유형자산	7,233	7.6	7,383	7.6	6,944	**7.2**
주민편의시설	2조 6,353	27.5	2조 8,006	28.8	2조 8,826	**29.9**
사회기반시설	5조 6,174	58.7	5조 6,824	58.4	5조 6,499	**58.5**
기타비유동자산	165	0.2	134	0.1	**100**	**0.1**

○ **부채는 5,721억원으로 전년대비 141억원(2.5%) 증가**하였습니다.

- 중앙정부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 증가

<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3		2024		202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954	100	5,580	100	**5,721**	**100**
유동부채[1]	820	16.6	950	17.0	**867**	**15.2**
장기차입부채[2]	3,240	65.4	3,750	67.2	**4,176**	**73.0**
기타비유동부채[3]	894	18.0	880	15.8	678	**11.8**

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
2)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 재정운영 분석

○ **총수익은 1조 9,863억원으로 전년대비 3,024억원(17.9%)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익과 재산임대료, 사용료수익 등의 경상세외수익, 보조금반환수입 등의 임시 세외수익 증가

- 국고보조금수익, 지방교부세수익 등 정부간이전수익 증가

<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23		2024		202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조 6,531	100	1조 6,839	100	1조 9,863	**100**
자체조달수익[1]	1조 411	63.0	1조 703	63.6	**1조 2,186**	**61.3**
정부간이전수익[2]	5,816	35.2	5,849	34.7	**7,306**	**36.8**
기타수익[3]	304	1.8	287	1.7	**371**	**1.9**

1)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
2) 지방교부세수익, 보조금수익 등
3) 전입금수익 등

○ **총비용은 2조 166억원**으로 **전년대비 2,593억원(14.7%) 증가**하였습니다.

- **(인건비)** 공무원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인상 등 반영
- **(운영비)** 차입금이자비용, 위탁대행사업비, 수선유지비용 등 증가
- **(이전비용)**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민간보조금 등 증가

< 최근 3년간 비용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3		2024		2025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조 7,040	100	1조 7,573	100	**2조 166**	**100**
인건비[1]	2,619	15.4	2,806	16.0	**3,018**	**15.0**
운영비[2]	5,437	31.9	5,900	33.6	**6,677**	**33.1**
정부간이전비용[3]	1,062	6.2	1,042	6.0	**1,197**	**6.0**
민간등이전비용[4]	6,327	37.1	6,177	35.1	**7,670**	**38.0**
기타비용[5]	1,595	9.4	1,648	9.3	**1,604**	**7.9**

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3) 지방자체단체간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경 제 산 업 국

II 경제산업국 소관

1. 개 요

가. 세입결산

○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29억 768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1,544억 5,554만원으로, 1,544억 3,851만 8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1,702만 2천원이 발생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A-B)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B)	
합 계	**152,907,687**	**154,455,540**	**154,537,278**	**98,760**	**154,438,518**	**17,022**
일반회계	**134,984,568**	**135,007,492**	**135,091,237**	**98,760**	**134,992,478**	**15,014**
경제정책과	100,703,003	100,510,506	100,539,762	30,601	100,509,161	1,346
미래산업과	4,147,898	4,105,851	4,114,622	14,157	4,100,465	5,386
기업지원과	14,787,344	14,795,364	14,841,865	54,001	14,787,864	7,500
소상공인과	6,827,940	6,878,071	6,878,071	-	6,878,071	-
산업입지과	8,518,383	8,717,699	8,716,917	-	8,716,917	782
공기업특별회계	**5,402,882**	**6,910,341**	**6,908,333**	**-**	**6,908,333**	**2,008**
공영개발사업 (산업입지과)	5,402,882	6,910,341	6,908,333	-	6,908,333	2,008
기타 특별회계	**12,520,237**	**12,537,708**	**12,537,708**	**-**	**12,537,708**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경제정책과)	3,819,353	3,836,829	3,836,829	-	3,836,829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경제정책과)	8,687,620	8,687,614	8,687,614	-	8,687,614	-
자치분권 (기업지원과)	13,264	13,265	13,265	-	13,265	-

나. 세출결산

○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38억 5,254만 1천원으로, 1,908억 5,141만 8천원(93.62%)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9억 1,515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5,856만 1천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합 계	**203,852,541**	**190,851,418**	**9,227,408**	**1,915,154**	**1,858,561**	**93.62%**
일반회계	**194,783,761**	**183,522,260**	**8,135,232**	**1,899,930**	**1,226,340**	**94.22%**
경제정책과	117,920,860	115,549,044	-	1,892,386	479,431	97.99%
미래산업과	16,472,437	16,400,044	60,000	-	12,393	99.56%
기업지원과	28,108,049	22,353,578	5,729,399	169	24,903	79.53%
소상공인과	20,650,161	20,469,268	-	7,375	173,518	99.12%
산업입지과	11,632,254	8,750,327	2,345,832	-	536,095	75.22%
공기업특별회계	**5,402,882**	**3,916,229**	**856,009**	**-**	**630,644**	**72.48%**
공영개발사업 (산업입지과)	5,402,882	3,916,229	856,009	-	630,644	72.48%
기타 특별회계	**3,665,898**	**3,412,929**	**236,168**	**15,224**	**1,577**	**93.1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경제정책과)	1,179,353	927,807	236,168	15,224	154	78.67%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경제정책과)	1,991,015	1,989,592	-	-	1,423	99.93%
자치분권 (기업지원과)	495,530	495,530	-	-	-	100.00%

다. 성과보고서

1) 성과목표 현황 (성과보고서 282쪽, 343쪽)

실국명	성과목표 (건)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경 제 산 업 국	1	19	39	14	24	1

○ 성과지표 중 '창업기업 지원에 따른 매출액 상승률(%)[경제정책과]'의 달성률은 366.6%(목표 6% / 실적 22%)이며, '소상공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율(%)[소상공인과]'의 달성률은 713.3%(목표 15% / 실적 107%)으로, 목표치를 크게 초과 달성함

- 해당 지표들은 전년도 매출이 없었던 창업기업의 매출 발생과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증가 등이 초과 달성 원인으로 제시됨

- 다만, 달성률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만큼, 당초 목표치의 설정 근거와 사업 여건의 변화가 목표 설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성과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할 경우 높은 달성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개선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최근 실적과 사업 규모,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성과보고서 284쪽)

부 서	성과지표명(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 성 률	'24년 달성성과	'25년 달성성과
경제정책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지출실적 / 사업비 지출계획) * 100	목표	-	80
			실적	-	62.9
			달성률(%)	-	78.6

○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공정기간 부족으로 인해 사업비를 명시이월함에 따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라.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증감액			2025년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중소기업육성기금	3,301,429	△1,398,129	71,133	1,469,262	1,903,300

2.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349억 8,456만 8천원, 징수결정액은 1,350억 749만 2천원으로, 1,349억 9,247만 8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1,501만 4천원이 발생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합 계	**134,984,568**	**135,007,492**	**134,992,478**	**15,014**	**99.99%**
세 외 수 입	7,604,778	7,447,491	7,432,477	15,014	99.80%
보 조 금	111,163,922	111,353,922	111,353,922	-	10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6,215,868	16,206,079	16,206,079	-	100.00%

○ 주요 미수납 내역

- **(기업지원과** 결산서 389쪽**)**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금 75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액 미수납된 바, 예산 미반영 사유와 미수납 경위 및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235-01 부정이익환수금	-	7,500	-	7,500	0%

2) 세출결산

가) 주요 집행 부진사업 현황 * 집행률 70% 이하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경제정책과	❶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8,000	3,160	-	4,840	39.50%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조성 추진	2,020	1,214	-	806	60.08%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	2,908	1,110	-	1,798	38.17%
	기본경비	25,736	17,581	-	8,155	68.31%
기업지원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8,757,088	13,027,614	5,729,399	75	69.45%
산업입지과	❷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전환사업)	6,720,863	4,046,655	2,299,396	374,812	60.21%
	❸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유지관리	160,000	99,185	-	60,815	61.99%
	❹ 배수지 건설	30,000	20,702	-	9,298	69.01%
	오폐수처리시설 건설	80,000	49,400	21,229	9,371	61.75%
	완충저류시설 건설	35,000	21,320	9,141	4,539	60.91%

❶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결산서 439쪽)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25년 본예산으로 사무관리비(8백만원)와 국내여비(2백만원)를 편성하였으나, '25년 제3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추경 감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484만원이 발생한 바, 향후 사업 추진계획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음

❷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전환사업)** (결산서 450쪽)

○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은 '25년 본예산으로 12억 1,2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37%(4억 4,911만원)만 지출하고, '수자원공사 협의지연으로 '26년 사업 추진 가능'을 사유로 예산액의 62.9%(7억 6,230만원)를 명시이월함

- 아울러, 명시이월예산 35억 519만 2천원 중에서 51%(17억 8,908만 6천원)만 지출하고, 43.9%(15억 3,709만 6천원)는 사고이월, 5.1%(1억 7,901만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고, 사고이월예산 20억 337만 1천원 중에서는 90.3%(18억 845만 9천원)를 지출하였으나, 9.7%(1억 9,491만 2천원)는 불용처리함

< '25년 예산액 및 집행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6,720,863**	**4,046,655**	**2,299,396**	**762,300**	**1,537,096**	**374,812**
본예산	**계**	**1,212,300**	**449,110**	**762,300**	**762,300**	**-**	**890**
	시설비	404,100	-	404,100	404,100	-	-
	감리비	800,000	449,110	350,000	350,000	-	890
	시설부대비	8,200	-	8,200	8,200	-	-
명시이월	**계**	**3,505,192**	**1,789,086**	**1,537,096**	**-**	**1,537,096**	**179,010**
	시설비	3,029,862	1,319,539	1,537,096	-	1,537,096	173,227
	감리비	456,050	456,050	-	-	-	-
	시설부대비	19,280	13,497	-	-	-	5,783
사고이월	**계**	**2,003,371**	**1,808,459**	**-**	**-**	**-**	**194,912**
	시설비	2,003,371	1,808,459	-	-	-	194,912

※ 자료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자료 재구성

○ 해당 사업은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이는 예산의 적기 집행을 저해하고 시급한 사업의 재원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규모와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이월과 이월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업 추진이 '26년까지 지연된 만큼, 향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과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❸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유지관리 (결산서 450쪽)

○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산업단지 내 용수공급시설(송·배수관, 가압장 등)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가압장 펌프 모터 교체, 유량계 교체 등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도 내 집행 가능액과 집행잔액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25년 본예산 산출내역 >

통계목	산출내역	
	사업명	산출근거
시설비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유지관리	○ (시설비)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유지관리 ‣ 대곡리 공업용수 가압장맨홀 누수 및 배수로정비 10,000천원 ‣ 전의산단 가압장 인버터, 배수지 제수밸브 교체 등 20,000천원 ‣ 명학산단 가압장 배수펌프 고장 수리 등 15,000천원 ‣ 첨단산단 가압장펌프 모터 교체 등 10,000천원 ‣ 미래산단 가압펌프 증설, 유량계교체 등 85,000천원 ‣ 산단 용수공급시설 누수복구공사(연간 단가계약) 20,000천원

※ 자료 :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된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여 다른 재정수요에 활용하지 않고, 예산액의 38%를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❹ 배수지 건설 (결산서 450쪽)

○ **배수지 건설**은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25.7.8., 세종시·LH·세종도시교통공사)에 따라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주민에게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임

<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세종시 기반시설 설치 내역 >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억원)			재원부담
		총계	국비	시비	
합 계		**1,131**	**321**	**810**	
진입도로	4차로 신설·확장 2.1㎞	341	-	341	시 100%
배수지	생활 3천㎥, 공업 4.5천㎥	103	-	103	시 100%
폐수처리시설	13천㎥	455	159	296	국35%, 시65%
완충저류시설	12.4천㎥	232	162	70	국70%, 시30%

* 산단 조성계획 상('23.10, 국토부) 추정 사업비

※ 자료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25.5.9./의안번호 4526)

○ '25년 본예산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5년 제3회 추경에서 '과업 난도 및 투입인력 조정'을 사유로 3천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총 2,070만 2천원을 집행하여 92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집행잔액 중 낙찰차액 42만 6천원을 제외한 887만 2천원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된 바, 구체적인 불용사유와 '25년 제3회 추경 편성 당시 이를 추가 감액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예산의 변경

(1)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의 전용 : 2건 (결산서 849쪽)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전용 금액	사 유
총 2건			47,451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201-01 사무관리비	36,451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라 사무관리비 전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환사업)	201-03 행사운영비	11,000	전통시장 편의시설 긴급 누수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 **(경제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중 3,645만 1천원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함('25. 10. 1.)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편의시설 긴급 누수 보수공사를 위해 상권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예산(행사운영비) 9,180만원 중 1,1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함('25. 11. 24.)

- 상권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市가 공동마케팅 행사 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상권별 맞춤형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5. 4월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

-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액 8,078만 4천원을 제외한 1,101만 6천원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지 않고, 이후 1,1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함

(3) 예산의 변경사용 : 3건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변경 금액	사 유
총 3건			363,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307-08 이차보전금	40,000	민관협력배달앱 캐시백 예산 조기 소진, 하반기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이차보전금 예산 중 일부 활용
	민관협력 배달앱 홍보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산업입지과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260,000	(명시이월예산)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사업 세출 예산 변경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전환사업)	401-02 감리비		
산업입지과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63,000	(명시이월예산)본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기간 연장 필요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전환사업)	401-02 감리비		

※ 변경사용 현황은 결산서 외 별도 예산집행 자료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작성

○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5억 9,448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9,8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이차보전금 중 4천만원을 민관협력 배달앱 캐시백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사용함('25. 7. 23.)

-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차보전금 소요액을 증액한 이후 일부를 다른 사업에 변경사용한 바, 추경 편성 당시 이차보전금 수요 및 소요액 산정이 적정했는지와 변경사용으로 인해 당초 금융 지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업입지과)**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 명시이월예산의 시설비 중 총 3억 2,30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하였으며, 이 중 6,300만원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연장을 위해 변경함(1차 '25. 5. 27. 2억 6천만원 / 2차 '25. 11. 10. 6,300만원)

- 해당 사업 명시이월예산의 시설비 33억 5,286만 2천원 중 9.6%(3억 2,300만원)를 감리비로 변경사용한 바,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감리비 추가 소요를 고려하더라도 당해연도 시설비와 감리비의 소요액 산정 및 예산 배분이 적정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함

- 향후에는 사업 규모와 공정계획, 연도별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계목별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5) 예비비 지출 : 1건 (결산서 865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산업입지과	산업단지 관리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20,000	19,612	-	388	부강일반산업단지 긴급 제설장비 구입

○ 경제산업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부강일반산업단지 긴급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천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1,961만 2천원을 지출함('25. 2. 4.)

○ 제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4. 11. 21.)에서 동절기 제설장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비 등을 활용한 장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제설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산업단지의 제설 수요는 동절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향후에는 산업단지별 제설 여건과 보유 장비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확보하는 등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장비 관리가 필요할 것임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 명시이월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298쪽)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6건, 65억 5,170만원임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6건)			**25,587,950**	**24,517,149**	**17,124,345**	**6,551,700**	
미래산업과	지역 과학산업 활동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00	60,000	60,000	60,000	12월 예산 교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미집행 금액 이월
기업지원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17,492,088	17,203,379	12,436,265	5,055,824	2차수 공사('25. 7월~'26.1월) 진행중으로 '26.1월 2차수 준공에 따라 이월예산 집행 예정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센터 건립	401-02 감리비	1,255,000	1,241,078	581,425	673,576	2차수 공사('25. 7월~'26.1월) 진행중으로 '26.1월 2차수 준공에 따라 이월예산 집행 예정
산업입지과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전환사업)	401-01 시설비	5,437,333	4,744,035	3,127,998	404,100	스마트산단 진입도로와의 중복구간(L=1.8㎞) 수자원공사 협의지연으로 26년 용수도 사업 추진 가능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전환사업)	401-02 감리비	1,256,050	1,255,160	905,160	350,000	스마트산단 진입도로와의 중복구간(L=1.8㎞) 수자원공사 협의지연으로 26년 용수도 사업 추진 가능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전환사업)	401-03 시설부대비	27,479	13,497	13,497	8,200	스마트산단 진입도로와의 중복구간(L=1.8㎞) 수자원공사 협의지연으로 26년 용수도 사업 추진 가능

(2) 사고이월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309쪽)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4건, 15억 8,353만 2천원임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4건)			**5,613,333**	**4,905,436**	**3,242,962**	**1,583,532**	
산업 입지과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전환사업)	401-01 시설비	5,437,333	4,744,035	3,127,998	1,537,096	용수공급을 위한 관계기관(수자원공사) 통수 협의 지연으로 이월 필요
	산업단지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000	60,311	44,244	16,066	사업추진 중 물품(제설기)의 납품 기한이 '26. 2월로 지출이 당해년에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필요
	오폐수처리 시설 건설	401-01 시설비	80,000	70,629	49,400	21,229	금강유역환경청 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 승인 협의 지연
	완충저류 시설 건설	401-01 시설비	35,000	30,461	21,320	9,141	금강유역환경청 완충저류 시설 설치운영계획 협의 지연

○ **(산업단지 관리)** 제설기 구입을 위해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물품 납품기한이 ’26년 2월로 정해짐에 따라 1,606만 6천원을 사고이월함

- 결산검사의견서(28쪽)에서도 해당 건을 ‘사고이월 사유 부적정 사례’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납기가 회계연도를 넘긴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아울러 제설기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적기에 확보해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일부 장비의 납품기한이 ’26년 2월로 정해진 바, 향후에는 장비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 및 납품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계속비이월 현황 : 해당없음

3] 결산검사 의견서

가)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 철저(전 부서 / 결산검사 의견서 25쪽)

(1) 문제점

○ 세출예산 결산액 2,130,064백만원 중 지방보조금 결산 총액이 152,827백만원으로 2025회계연도 기준 점유 비율이 전년도 대비 처음 감소는 되었으나 타 시도 평균 2.2%(2024회계연도 기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이와 관련 매년 결산 검사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은 보통교부세 감액 사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함께 지방보조금 축소 운영 등 대책 마련을 계속하여 권고해 왔음

(2)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의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보조금 점유율을 다른 자치단체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철저하고 다양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나) 사고이월 사유의 적정성 확보 필요(산업입지과 / 결산검사 의견서 28쪽)

(1) 문제점

(단위 : 천원)

회계별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일반회계	산업입지과	산업단지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66	사업 추진 중 물품(제설기)의 납품 기한이 '26. 2월로 지출이 당해년에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필요

○ 법령에 따르면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됨

○ 단순히 준공시기나 납기가 회계연도를 넘긴다는 사실은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등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2) 개선 및 권고사항

○ 사고이월은 법령상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 처리 시에는 천재지변, 관급자재 수급 불안,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했던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다) 전략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소상공인과 /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1) 문제점

○ 성과지표가 산출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영향 수준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확대가 필요함

○ 지표의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이 일부 부족하며, 지표명과 측정대상 간 불일치나 실질적 측정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지표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제약이 존재함

○ 성과목표의 설정 근거가 불충분하여 목표값의 타당성과 도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정량적 자료와 실적 기반의 목표설정 논리 마련이 요구됨

(2) 개선 및 권고사항

○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의 설정과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함

○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 개선을 권고함

○ 정책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우대방안(승진, 보직, 예산, 표창 등)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산업단지 등 신뢰성 높은 분양가격 산정(산업입지과 / 결산검사 의견서 42쪽)

(1) 문제점

○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함에 있어 최초분양가액보다 최종분양가액이 10%~15% 상승함에 따라 증가액을 부담해야 하는 수분양기업들의 민원과 불만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의제기와 소송에 이르는 사례도 늘고 있음

○ 대부분의 수분양기업들은 최초분양가를 신뢰하여 이에 근거하여 입주 여부와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있음

○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당초 사업기간은 2019.10.10.~ 2023.12.31.로 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단가를 180만원으로 계산하여 분양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10% 상향한 가격인 198만원으로 분양하여 평당 분양가격을 180만원으로 신뢰한 수분양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2) 개선 및 권고사항

○ 분양가격 산정 시 공사대금, 용지보상비 등 원가산정을 치밀하게 함으로써 수분양기업들과 계약 당시 분양금액과 최종분양금액의 차액을 최소화하여 신뢰성과 투자심리를 제고하기 바람

나.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9억 2,311만 9천원, 징수결정액은 194억 4,804만 9천원으로, 194억 4,604만 1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200만 8천원이 발생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합 계	**17,923,119**	**19,448,049**	**19,446,041**	**2,008**	**99.99%**
공기업특별회계	**5,402,882**	**6,910,341**	**6,908,333**	**2,008**	**99.97%**
공영개발사업 (산업입지과)	5,402,882	6,910,341	6,908,333	2,008	99.97%
기타 특별회계	**12,520,237**	**12,537,708**	**12,537,708**	**-**	**100.0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경제정책과)	3,819,353	3,836,829	3,836,829	-	100.00%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경제정책과)	8,687,620	8,687,614	8,687,614	-	100.00%
자치분권 (기업지원과)	13,264	13,265	13,265	-	100.00%

-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는 대부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동일반산업단지 용지매출수입이 당초 세입예산 편성액을 초과한 것이 주요 원인임

○ 주요 미수납 내역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영업미수금 200만 8천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결정하였으나, 전액 미수납됨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182-01 영업미수금	-	2,008	-	2,008	0%

-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31쪽)에 따르면, 해당 미수금은 '21년부터 '23년까지 발생한 임대료 미수금으로, '24회계연도에 이어 '25회계연도에도 징수되지 않은 채 장기간 미수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바, 미수납 사유와 그동안의 징수 노력 및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발생일자	미수액	미수사유
임대미수금	2021-12-31	653	임대료 미수납
임대미수금	2022-12-31	579	
임대미수금	2023-12-31	776	

2) 세출결산

가) 주요 집행 부진사업 현황 * 집행률 70% 이하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공영개발사업 (산업입지과)	❶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3,164,914	1,696,097	856,009	612,808	53.59%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경제정책과)	신세종복합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	637,400	401,232	236,168	-	62.95%

❶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62쪽)

○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산현액 중 53.6%(16억 9,609만 7천원)만 지출하고, 27%(8억 5,600만 9천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4%(6억 1,280만 8천원)는 불용처리함

○ 해당 사업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추진한 사업임에도 예산현액의 27%를 다시 이월하고 19.4%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바, 반복적인 예산 이월 및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당초 사업비 산정 및 공정 관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11쪽)에 따르면 전동일반산업단지는 '25. 12. 30. 준공인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준공인가 이후에도 8억 5,600만 9천원을 이월하게 된 사유와 이월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예산의 변경

(1)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3) 예산의 변경사용 : 1건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변경금액	사 유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경제정책과)	세종절전소 지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580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 변경
	세종절전소 지정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변경사용 현황은 결산서 외 별도 예산집행 자료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작성

○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25년 본예산에 절전교육 강사수당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1,358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사용함('25. 12. 1.)

○ '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강사수당 지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사업내용과 집행방식에 적합한 통계목인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 '25년 본예산 산출내역 >

통계목	산출내역	
	항 목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45,000천원)	절전교육 (45,000천원)	○ 절전교육 강사 수당 지급 : 15,000천원 - [230천원(1시간) x 1인 + 90천원(1시간) x 3인] x 30개소(1회 방문) = 15,000천원 ○ 절전교육 물품(홍보물, 교육자료 등) 구입 : 30,000천원 - 1,000천원 x 30개소 x 1회 = 30,000천원

※ 자료 :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 향후에는 사업의 성격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5)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 명시이월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305~306쪽)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2건, 3억 3,616만 8천원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2건)			3,789,462	3,022,163	2,092,331	336,168	
공영개발사업 (산업입지과)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401-01 시설비	3,152,062	2,439,661	1,691,099	100,000	전동산단-노장농공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 관련 용역 및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경제정책과)	신세종복합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	401-01 시설비	637,400	582,502	401,232	236,168	사업 관련 추가 수요 발생으로 집행잔액 활용을 위한 명시이월 등

(2) 사고이월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313쪽)

○ **사고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총 2건, 7억 5,600만 9천원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2건)			3,159,914	2,440,066	1,691,504	756,009	
공영개발사업 (산업입지과)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401-01 시설비	3,152,062	2,439,661	1,691,099	748,562	전동산단-노장농공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 관련 용역 및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401-03 시설부대비	7,852	405	405	7,447	전동산단-노장농공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 관련 용역 및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시설비 7억 4,856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744만 7천원 등 총 7억 5,600만 9천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함

○ 결산검사 의견서(28쪽)에서도 해당 건을 ‘사고이월 사유 부적정 사례’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준공시기가 회계연도를 넘긴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향후에는 계약 체결 단계부터 사업기간과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 및 집행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계속비이월 현황 : 해당없음

3) 결산검사 의견서

가) 사고이월 사유의 적정성 확보 필요(산업입지과 / 결산검사 의견서 28쪽)

(1) 문제점

(단위 : 천원)

회계별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공영개발사업	산업입지과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748,562	전동산단-노장농공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 관련 용역 및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공영개발사업	산업입지과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부대비	7,447	전동산단-노장농공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 관련 용역 및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 법령에 따르면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됨

○ 단순히 준공시기나 납기가 회계연도를 넘긴다는 사실은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등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2) 개선 및 권고사항

○ 사고이월은 법령상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 처리 시에는 천재지변, 관급자재 수급 불안,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했던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나) 공영개발사업 잉여금 과다(산업입지과 / 결산검사 의견서 43쪽)

(1) 문제점

○ 공영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의 주도로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여 개발이익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2025년말 이익잉여금 누적액은 54,635백만원으로 개발원가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지역 산업체와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칫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여겨질 수 있음

(2)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영개발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수분양자 및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망 개설 등 주변 인프라 구성 등에 비용 지출이 필요함

○ 토지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평가차익)이 94,430백만원으로 토지의 자산가액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다. 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1) 수입결산

○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현액은 33억 7,232만 2천원, 징수결정액은 33억 7,256만 2천원으로, 33억 7,256만 2천원을 수납하여 계획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24만원을 초과 수납함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계획현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증감액(B-A)
합 계	**3,372,322**	**3,372,562**	**3,372,562**	**240**
세 외 수 입	70,893	71,133	71,133	240
공공예금 이자수입	68,752	68,992	68,992	240
기 타 이자수입	17	17	17	-
그외수입	2,124	2,124	2,124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301,429	3,301,429	3,301,429	-
예치금회수	3,301,429	3,301,429	3,301,429	-

2) 지출결산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현액은 33억 7,232만 2천원으로, 33억 7,256만 2천원을 지출하였음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계획현액(A)	지출액(B)	증감액(B-A)	집행률(B/A)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3,372,322**	**3,372,562**	**240**	**100.01%**
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예치금)	602-01 일반 예치금	1,704,693	1,903,300	198,607	111.65%
중소기업 자금(기금 이차보전) 지원	201-01 사무 관리비	760	760	-	100.00%
	307-08 이차 보전금	1,611,869	1,413,502	△198,367	87.69%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5,000	55,000	-	100.00%

○ 예치금은 수입계획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24만원)과 이차보전 사업비 감소분(1억 9,836만 7천원)을 반영함에 따라 지출계획현액 17억 469만 3천원 대비 1억 9,860만 7천원 증가한 19억 330만원임

○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도말 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3)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금리 인하 및 자금대출 저조에 따른 이차보전사업비 감소분(2억 7,600만 9천원), 위원회 수당 지출 감소분(24만 8천원)을 반영하고, 지출 감소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2억 8,411만 5천원)을 반영함

(단위 : 천원)

과 목		당초금액(A)	변경액(B)	증감액(C=B-A)	비율(C/A)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3,309,464**	**3,317,322**	**7,858**	**0.24%**
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예치금)	602-01 일반 예치금	1,420,578	1,704,693	284,115	20.00%
중소기업 자금(기금 이차보전) 지원	201-01 사무 관리비	1,008	760	△248	△24.60%
	307-08 이차 보전금	1,887,878	1,611,869	△276,009	△14.62%

투 자 유 치 단

Ⅲ 투자유치단 소관

1. 개 요

가. 세입결산

○ **투자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3억 6,606만 2천원, 징수결정액은 96억 7,363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A-B)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B)	
합 계	10,366,062	9,673,633	9,673,633	-	9,673,633	-
일반회계	10,366,062	9,673,633	9,673,633	-	9,673,633	-
특별회계	-	-	-	-	-	-

나. 세출결산

○ **투자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27억 7,173만 2천원으로, 88억 6,683만 5천원(69.43%)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억 2,939만 7천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합 계	12,771,732	8,866,835	875,500	-	3,029,397	69.43%
일반회계	12,771,732	8,866,835	875,500	-	3,029,397	69.43%
특별회계	-	-	-	-	-	-

다. 성과보고서

1) 성과목표 현황 (성과보고서 63쪽)

부서명	성과목표 (건)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투 자 유 치 단	1	3	4	2	2	0

○ **투자유치단**은 총 4개 성과지표의 모든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2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음

- 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목표액 5,000억원 대비 1조 151억원을 달성하여 달성률이 203%에 이르고, MOU 체결기업 대상 사후관리 역시 목표 5회 대비 7회를 실시하여 140%를 달성하였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근 실적과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라.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증감액			2025년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투자진흥기금	23,025,018	△860,106	475,954	1,336,060	22,164,912

2.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투자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3억 6,606만 2천원, 징수결정액은 96억 7,363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합 계	**10,366,062**	**9,673,633**	**9,673,633**	-	**100.00%**
세 외 수 입	20	50	50	-	100.00%
보 조 금	4,281,000	3,588,541	3,588,541	-	10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085,042	6,085,042	6,085,042	-	100.00%

○ 보조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결산서 383쪽)은 예산현액 42억 8,100만원 대비 35억 8,854만 1천원을 수납하여 당초 예산보다 6억 9,245만 9천원 감소하였음

- 보조금이 당초 예산 대비 감소한 사유와 교부결정 변경 시점을 확인하고, 교부액 변경이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세출결산

가) 주요 집행 부진사업 현황 * 집행률 70% 이하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투자유치단	❶기업유치보조금 지원	600,000	-	-	600,000	0%
	행복도시 미디어단지 전략구상 연구용역	20,000	-	19,000	1,000	0%

❶ 기업유치보조금 지원 (결산서 436쪽)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기업의 이전·증설 및 창업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기업의 2차 보조금 지급을 위해 사고이월한 6억원이 2025년도 중 전액 미집행되어 불용 처리되었음

- 사고이월한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향후 다시 재원을 확보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고이월 당시 지원기업의 투자 이행기간과 보조금 지급 가능 시기 및 향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고이월 내역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000,000	2,000,000	1,400,000	600,000	지원기업(2개사)의 투자기간이 '24~'25년에 걸쳐있어 2차 보조금(정산금) 지급분을 사고이월하여 지급하고자 함

※ 자료 :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나) 예산의 변경

(1)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3)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없음

(4)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5)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 명시이월 현황 : 해당없음

(2) 사고이월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309쪽)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2건, 8억 7,550만원임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2건)			**12,091,196**	**9,669,577**	**8,794,077**	**875,500 (556,725)**	
투자유치단	지역투자촉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2,071,196	9,650,577	8,794,077	856,500 (556,725)	2023년 지원기업의 정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2차 보조금(정산금) 지급분을 사고이월하여 정산 후 지급하고자 함
	행복도시 미디어단지 전략구상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000	19,000	-	19,000	행복청-세종시 공동연구용역 추진으로 주관기관인 행복청의 계약상 납기 부족으로 연도내 준공 불가

※다음연도 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지역투자촉진)** 2023년 지원기업의 정산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2차 보조금(정산금) 지급분 8억 5,6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 중 5억 5,672만 5천원은 자금 없는 이월액임

- 지원기업의 정산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고이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정산 진행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고이월액 중 5억 5,672만 5천원이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된 구체적인 사유와 재원 확보 여부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계속비이월 현황 : 해당없음

나.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기금

【 투자진흥기금 】

1) 수입결산

○ **투자진흥기금** 수입계획현액은 121억 6,053만 6천원, 징수결정액은 121억 6,763만 8천원으로, 121억 6,763만 8천원을 수납하여 계획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 710만 2천원을 초과 수납함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계획현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증감액(B-A)
합 계	**12,160,536**	**12,167,638**	**12,167,638**	**7,102**
세 외 수 입	62,184	69,288	69,288	7,102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62,184	69,288	69,288	7,102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12,098,352	12,098,350	12,098,350	-
예 치 금 회 수	3,025,017	3,025,018	3,025,018	-
예 탁 금 원 금 회 수 수 입	8,666,668	8,666,666	8,666,666	-
예 약 금 이 자 수 입	406,667	406,667	406,667	-

2) 지출결산

○ **투자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은 121억 6,053만 6천원으로, 121억 6,763만 8천원을 지출하였음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계획현액(A)	지출액(B)	증감액(B-A)	집행률(B/A)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2,160,536**	**12,167,638**	**7,102**	**100.06%**
투자유치 활동 육성	201-01 사무 관리비	2,520	1,060	△1,460	42.06%
보전지출 (투자진흥기금-예치금)	602-01 일반 예치금	23,016	31,558	8,542	137.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투자진흥기금)	704-01 예탁금	10,800,000	10,800,000	-	100.00%
세종미래전략 펀드 조성	502-01 출자금	1,000,000	1,000,000	-	100.00%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35,000	335,000	-	100.00%

○ 예치금은 지출계획현액 2,301만 6천원 대비 854만 2천원 증가한 3,155만 8천원임

3) 기금운용계획 변경

○ 결산 수입 변동에 따른 일반예치금 증액분(1억 3,623만 4천원)을 반영하고, 세종미래전략펀드 조성사업의 통계목을 출연금에서 출자금으로 변경하였음

(단위 : 천원)

과 목		당초금액(A)	변경액(B)	증감액(C=B-A)	비율(C/A)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2,021,782**	**2,158,016**	**136,234**	**6.74%**
보전지출(투자진흥기금-예치금)	602-01 일반예치금	1,021,782	1,158,016	136,234	13.33%
세종미래전략펀드 조성	306-01 출연금	1,000,000	-	△1,000,000	△100%
	502-01 출자금	-	1,000,000	1,000,000	순증

○ 세종미래전략펀드 조성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당해연도에도 동일하게 출연금에서 출자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적정한 통계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도 농 상 생 국

Ⅳ 도농상생국 소관

1. 개 요

가. 세입결산

○ **도농상생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64억 5,861만원, 징수결정액은 572억 2,478만 3천원으로, 571억 6,209만 2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6,269만 2천원이 발생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A-B)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B)	
합 계	**56,458,610**	**57,224,783**	**57,273,713**	**111,621**	**57,162,092**	**62,692**
일반회계	**33,621,565**	**34,577,743**	**34,626,673**	**111,621**	**34,515,052**	**62,692**
도농정책기획과	10,261,997	11,002,066	10,960,764	-	10,960,764	41,303
농업정책과	13,779,358	13,818,348	13,897,286	100,000	13,797,286	21,062
우리농산물유통과	1,029,021	1,029,899	1,041,520	11,621	1,029,899	-
동물정책과	8,551,189	8,727,430	8,727,103	-	8,727,103	327
기타 특별회계	**22,837,045**	**22,647,040**	**22,647,040**	**-**	**22,647,040**	**-**
조치원·연기비행장통합이전및양여부지개발사업(도농정책기획과)	14,055,745	13,886,137	13,886,137	-	13,886,137	-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우리농산물유통과)	8,781,300	8,760,903	8,760,903	-	8,760,903	-

나. 세출결산

○ **도농상생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177억 7,327만 9천원으로, 1,094억 8,893만 7천원(92.97%)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4억 8,515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억 2,244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합 계	**117,773,279**	**109,488,937**	**1,976,748**	**1,485,154**	**4,822,440**	**92.97%**
일반회계	**94,936,234**	**87,677,312**	**1,926,020**	**1,485,154**	**3,847,748**	**92.35%**
도농정책기획과	19,355,926	14,328,920	1,285,204	815,028	2,926,774	74.03%
농업정책과	24,385,157	23,363,725	-	534,296	487,136	95.81%
우리농산물유통과	34,640,262	34,517,716	-	1,424	121,122	99.65%
동물정책과	16,554,889	15,466,951	640,816	134,406	312,716	93.43%
기타 특별회계	**22,837,045**	**21,811,625**	**50,728**	-	**974,692**	**95.51%**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도농정책기획과)	14,055,745	13,830,993	50,728	-	174,024	98.40%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우리농산물유통과)	8,781,300	7,980,632	-	-	800,668	90.88%

다.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361~380쪽)

1) 성과목표 현황

실국명	성과목표 (건)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도농상생국	1	14	25	2	23	-

2)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 해당없음

3) 검토의견

○ 2025회계연도 도농상생국 소관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여 표면적인 성과는 긍정적이나,

- 일부 지표가 회의 개최 횟수 등으로 설정되어 지표 달성 여부만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없음

-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에는 사업의 본래 목적과 시민 체감도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효과 중심의 성과지표' 로 개선이 필요함

< 성과지표 달성현황(도농상생국 일부) >

부 서	성과지표명(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 성 률	'24년 달성성과	'25년 달성성과
도 농 정 책 기 획 과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횟수)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실적	목표	1	1
			실적	0	1
			달성률(%)	0%	100%
	세종미래마을 추진단 회의 횟수(횟수)	세종미래마을 추진단 회의 개최 수	목표	-	2
			실적	-	2
			달성률(%)	-%	100.0%

라.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증감액			2025년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농업발전기금	20,259,325	805,912	9,425,105	8,619,193	21,065,237

○ 농업발전기금 2025년말 조성액은 210억 6,523만 7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인 202억 5,932만 5천원 대비 8억 591만 2천원 증가함

2.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도농상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36억 2,156만 5천원, 징수결정액은 345억 7,774만 4천원으로, 345억 1,505만 2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6,269만 2천원이 발생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합 계	**33,621,565**	**34,577,744**	**34,515,052**	**62,692**	**99.82%**
세외수입	1,642,220	1,673,615	1,612,234	61,382	96.33%
보 조 금	22,106,406	22,407,637	22,407,637	-	10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9,872,939	10,496,492	10,495,181	1,310	99.99%

○ **주요 미수납 내역**(도농정책기획과, 결산서 394쪽)

- 도농상생국 전체 미수납액 6,269만 2천원 중 도농정책기획과 소관 미수납액이 4,130만 3천원(65.88%)을 차지함

- 주요 미수납 내역(아래표 참고)으로 국유재산사용허가 수수료(기타사용료) 미수납액이 2,289만원(징수율 87.2%)과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변상금) 미수납액이 1,841만원(징수율 35.0%)으로 나타남

- 특히 무단 점용 변상금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명확한 미수납 사유 및 징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212 사용료수입	**200,000**	**178,774**	**155,884**	**22,890**	**87.20%**
212-09 기타사용료	200,000	178,774	155,884	22,890	87.20%
233 변상금	**15,000**	**28,342**	**9,929**	**18,413**	**35.03%**
233-01 변상금	15,000	28,342	9,929	18,413	35.03%

○ **부정이익환수금**(농업정책과, 결산서 396쪽)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환급액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235 환수금	**10,923**	**125,576**	**-**	**106,499**	**19,077**	**84.81%**
235-01 부정이익환수금	10,923	125,576	-	106,499	19,077	84.81%

- 농업정책과 소관 부정이익환수금의 예산현액은 1,092만 3천원이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1억 2,557만 6천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약 11.5배 초과 발생함

- 또한 전체 부과액 중 1억 649만원이 수납되어 1,907만원(징수율 84.81%)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 대비 징수액 급증 사유 및 미수납액 징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환급액**(농업정책과, 결산서 397쪽)

- 농업정책과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교부된 보조금 1억원의 환급액이 발생함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환급액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511 국고보조금등	**12,289,086**	**12,329,370**	**100,000**	**12,329,370**	**-**	**100.00%**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87,990	687,990	100,000	687,990	-	100.00%

- 결산서상 환급액 1억원의 발생 사실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환급 사유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므로,

- 부서에서는 국비 환급이 발생한 사유를 밝히고, 당초 사업 대상 선정 및 사전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함

2) 세출결산

가) 주요 집행 부진사업 현황

(1) 도농정책기획과 * 집행률 70% 이하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 잔액 (A-B-C)	집행률 (B/A)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 (빈집정비)	166,000	76,354	14,276	75,370	46.00%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925,576	189,364	-	1,736,212	9.83%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광역)	452,342	304,045	-	148,297	67.22%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	2,103,935	1,324,670	779,266	-	62.96%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 사업	461,616	-	-	461,616	0%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통합지구)	2,571,032	1,364,002	200,990	1,006,040	53.05%
소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245,700	91,928	153,772	-	37.41%
장군면 용암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90,000	62,600	127,401	-	32.95%

○ 도농정책기획과는 집행률 70% 이하 사업이 8개로,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은 세종미래마을조성사업,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이 있음

○ 도시재생 및 농촌지역개발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승인, 실시설계, 토지·건축물 소유자 협의 및 공사 발주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이라는 특성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업 추진일정과 행정절차 이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해진 예산을 적기에 감액하지 않은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특히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현액 19억 2,557만 6천원 중 1억 8,936만 4천원만 지출하여 집행률이 9.83%에 그쳤으며(집행잔액 17억 3,621만 2천원),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은 예산현액 4억 6,161만 6천원 전액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도농정책기획과는 사업별 집행 부진 원인, 계속비 또는 이월 조치 여부, 사업계획 변경·축소 여부 및 향후 사업 완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농업정책과 * 집행률 70% 이하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 잔액 (A-B-C)	집행률 (B/A)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5,400	2,280	-	3,120	42.2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77,220	38,556	-	38,664	49.93%
GAP 농산물 육성 지원	294,950	197,415	-	97,535	66.93%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분담금)	172,553	84,548	-	88,005	49.00%
농지관리운영	184,700	112,241	-	72,459	60.77%

○ 농업정책과는 집행률 70% 이하 사업이 5개로, 주요 집행 부진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GAP 농산물 육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지관리운영 사업 등이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40만원 중 22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42.22%이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예산현액 7,722만원 중 3,855만 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49.93%로 나타남

○ 또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억 7,255만 3천원 중 8,454만 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9%에 그쳤으며, GAP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과 농지관리운영사업도 각각 66.93%, 60.77%의 집행률을 보임

○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신청 인원, 지원 대상 요건, 자부담 능력 및 사업 참여 의사 등에 따라 집행실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전년도 신청·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야 함

○ 특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건강 및 영농비 부담 경감과 직접 관련된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친 만큼, 사업 홍보 부족, 지원요건,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 정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소관 부서는 사업별 지원대상 인원과 실제 신청·지원 인원, 미집행 사유, 보조금 반납액 및 순수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지원단가와 사업량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임

(3) 우리농산물유통과 * 집행률 70% 이하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 잔액 (A-B-C)	집행률 (B/A)
세종시 먹거리 정책 추진및 위원회 운영	2,940	1,180	-	1,760	40.14%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2,400	1,474	-	926	61.42%

○ 우리농산물유통과는 '세종시 먹거리정책 추진 및 위원회 운영'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 2개 사업의 집행률이 70% 이하로 나타남

○ 세종시 먹거리정책 추진 및 위원회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94만원 중 11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40.14%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40만원 중 147만 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61.42%임

○ 개별 사업의 예산 규모는 크지 않으나, 위원회 개최 횟수와 보험가입 대상은 사업계획 수립 시 비교적 예측 가능한 항목이라는 점에서 실제 필요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향후에는 전년도 집행실적과 실제 대상 수요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적기에 감액하는 등 소액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4) 동물정책과 * 집행률 70% 이하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 잔액 (A-B-C)	집행률 (B/A)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16,600	9,343	-	7,257	56.28%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특교세)	149,000	68,911	-	80,089	46.25%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12,000	7,180	-	4,820	59.83%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 시설유지관리	51,300	33,696	-	17,604	65.68%
퇴액비살포비 지원	34,000	22,720	-	11,280	`66.82%

○ 동물정책과는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5개 사업의 집행률이 70% 이하로, 이 중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예산현액 1억 4,900만원 중 6,891만 1천원을 지출하여 8,008만 9천원을 미집행하였음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특수한 성격의 예산으로, 실제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집행실적이 달라질 수 있으나, 미집행액의 반납 여부, 사업기간 연장 가능성 및 다른 방역사업으로의 활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56.28%로 입양실적 감소, 지원요건 미충족, 사업 홍보 부족 등이 집행 부진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집행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충광농원 공동고액분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및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도 각각 집행률이 59.83%, 65.68%, 66.82%로 나타난 만큼, 지원대상과 실제 사업량을 과다 산정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임

나) 예산의 변경

(1)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3) 예산의 변경사용 : 6건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변경 금액	사 유
총 6건			98,578	
도농정책 기획과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401-02 감리비	15,168	(계속비이월예산) 부강면 부강리 안전보행로 조성사업 추진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401-01 시설비		
도농정책 기획과	보전지출	311-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74,580	지방채 차입선 변경 (금융채 → 정부자금채)
	보전지출	311-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00	청년농업인 교육 및 교류활동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증액 요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01-03 행사운영비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변경 금액	사 유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00	변경사용 재원 정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01-03 행사운영비		
우리농산물 유통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	202-01 국내여비	700	농식품 바우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
	농식품 바우처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우리농산물 유통과	로컬푸드 안전 먹거리 공급기반 확대	201-01 사무관리비	5,130	예산 변경 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전환
	로컬푸드 안전 먹거리 공급기반 확대	201-02 공공운영비		

※ 변경사용 현황은 결산서 외 별도 예산집행 자료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작성

○ 도농정책기획과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계속비 이월예산 중 감리비 1,516만 8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감리비는 공사의 품질·안전 및 시공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감리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사용한 것이 당초 감리계획과 현장관리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예산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 없이 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나,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의 본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5) 예비비 지출 : 총 4건(결산서 863~864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총(4건)			**97,610**	**72,132**	**25,478**	
도농정책기획과	균형발전사업	사무관리비	4,610	4,609	1	개간사업대상지선정 거부취소 청구의 소 패소(2023. 11. 17.)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
우리농산물유통과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공공운영비	9,000	8,987	13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긴급 발전차 임차
우리농산물유통과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시설비	4,000	-	4,000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전기간선작업비
동물정책과	야생동물관리지원	시설비	80,000	58,536	21,464	생태통로 긴급보수

○ **(도농정책기획과)**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했다면 지출의 불가피성과 긴급성은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소송 패소일이 2023년 11월 17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까지 소송비용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우리농산물유통과)** 우리농산물유통과는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전기간선 작업을 위해 예비비 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이 없이 전액 지출잔액으로 남았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출결정 후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지출결정 당시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작업을 취소한 시점과 사유, 계약 또는 발주 여부 및 불용 처리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 명시이월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284쪽)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8건)			2,675,368	2,039,322	1,656,323	538,036	
도농정책기획과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빈집정비)	시설비	166,000	76,354	76,354	14,276	빈집 철거 공사가 12월초에 준공됨에 따라 해당 부지 공공활용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일정 및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
도농정책기획과	소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사무관리비	5,500	2,335	2,335	3,165	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에 따른 위원회 수당, 사무용품, 사업홍보 등 물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다음 회계연도 사업추진에 활용
도농정책기획과	소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연구용역비	215,000	170,408	70,000	145,000	용역 1차 준공금 집행, 집행잔액을 다음 차 사업 추진에 활용
도농정책기획과	소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기타보상금	25,200	19,593	19,593	5,607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 잔액을 '26년으로 이월 필요
도농정책기획과	장군면 용암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비	100,000	67,170	44,000	32,831	'26년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활용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도농정책 기획과	장군면 용암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90,000	37,199	18,600	52,801	'26년 건축분야 설계비 등에 활용
동물 정책과	개식용 종식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403,668	1,153,963	913,141	146,356	지원금 채권압류 진행 및 자진철거 연기
동물 정책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사무관리비	670,000	512,300	512,300	138,000	연도말 교부('25.11.24.)에 따른, '26년 1~2월 거점·통제 소독시설 운영비 사용 예정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도농상생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8건, 5억 3,803만 6천원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지연, 토지소유자 협의, 용역 및 설계기간 부족, 지원대상자의 채권압류, 연도말 국비 교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함

(2) 사고이월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309쪽)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6건)			**2,719,607**	**2,214,323**	**1,605,604**	**608,720**	
도농정책기획과	북세종 농촌중심 지활성화 사업(통합지구)	연구용역비	705,939	572,090	371,100	200,990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용역 완료 예정일 '26. 2. 28.)
도농정책기획과	금남면 부용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관리비	10,000	9,500	-	9,500	금남면 부용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반공사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준공백서 작성 지연
도농정책기획과	장군면 용암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비	100,000	67,170	44,000	23,170	기본계획(안) 농식품부 협의 회신 지연으로 완료 처리 지연
도농정책기획과	장군면 용암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90,000	37,199	18,600	18,600	완료 시기('26. 2. 19.) 미도래
동물정책과	개식용 종식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403,668	1,153,963	913,141	240,822	명시이월 신청기간 경과 후, 공사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동물정책과	개식용 종식 지원사업	시설비	410,000	374,401	258,763	115,638	명시이월 신청기간 경과 후, 공사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연내 지출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고이월은 도농상생국 소관 총 6건, 6억 872만원임

○ 그러나 동물정책과 소관 개식용 종식 지원사업(2건)은 명시이월 신청기간 경과 후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 사고이월 제도를 명시이월 절차 미이행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함

(3) 계속비이월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315쪽)

(단위 : 천원)

과목			총사업비	예산 현액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6건)			15,756,300	2,030,927	1,251,661	779,266	
도농정책 기획과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3,481	1,859	1,622	부강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경비 이월
		연구용역비		224,423	40,676	183,747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시설비		1,536,841	1,004,275	532,566	부강면 주민거점시설 인테리어 공사비 이월
		시설부대비		2,800	2,796	4	부강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부대경비 이월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7,000	-	57,000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공사비 이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382	202,055	4,327	부강면 주민거점시설 운영물품 구매비용 이월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이월은 공사나 제조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일괄 의결받은 후,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도농상생국 일반회계 계속비이월은 총 6건, 7억 7,926만 6천원으로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 종료연도인 2026년을 앞두고 2025년도 예산현액의 38.37%인 7억 7,926만 6천원을 이월함

- 세부사업별 지연 사유와 2026년도 집행계획 및 사업기간 내 최종 완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결산검사 의견서

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용 필요 (우리농산물유통과, 동물정책과 / 결산검사 의견서 23쪽)

(1)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예산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편성·집행되어야 하나,

○ 우리농산물 소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활성화' 동물정책과 소관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2개 부서, 3개 사업의 8,520만원이 전액 미집행으로 불용처리됨으로써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2)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해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계획 및 집행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편성된 예산은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사업 목적 달성 및 사업 효과 극대화에 노력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현안 사업에 재원이 우선 사용 될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길 바람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우리농산물유통과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시설비	4,000	-	4,000
우리농산물유통과	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활성화	배상금등	1,200	-	1,200
동물정책과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사무관리비	80,000	-	80,000

나) 사고이월 사유의 적정성 확보 필요(도농정책기획과 / 결산검사 의견서 28쪽)

(1) 문제점

(단위 : 천원)

회계별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일반회계	도농정책 기획과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통합지구	연구 용역비	200,990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용역 완료 예정일 '26. 2. 28.)
일반회계	도농정책 기획과	장군면 용암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18,600	완료 시기('26. 2. 19.) 미도래

○ 법령에 따르면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됨

○ 단순히 준공시기나 납기가 회계연도를 넘긴다는 사실은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등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2) 개선 및 권고사항

○ 사고이월은 법령상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 처리 시에는 천재지변, 관급자재 수급 불안,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했던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다) 전략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필요

(우리농산물유통과 /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1) 문제점

○ 성과지표가 산출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영향 수준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확대가 필요함

○ 지표의 명확성 및 측정 가능성이 일부 부족하며, 지표명과 측정대상 간 불일치나 실질적 측정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지표 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제약이 존재함

○ 성과목표의 설정 근거가 불충분하여 목표값의 타당성과 도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정량적 자료와 실적 기반의 목표설정 논리 마련이 요구됨

(2) 개선 및 권고사항

○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의 설정과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함

○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 개선을 권고함

○ 정책사업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우대방안(승진, 보직, 예산, 표창 등)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구 분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완사항
			목표	실적	달성률	
우리농산물유통과	전년도 대비 직매장 소비자 회원수증가율 (%)	(금년도회원수-전년도회원수)/(전년도회원수)*100	3.0	14.2	473.3%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 변경 권고

나.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도농상생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28억 3,704만 5천원, 징수결정액은 226억 4,704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징수율(B/A)
기타 특별회계	**22,837,045**	**22,647,040**	**22,647,040**	**-**	**100%**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도농정책기획과)	14,055,745	13,886,137	13,886,137	-	100%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우리농산물유통과)	8,781,300	8,760,903	8,760,903	-	100%

2) 세출결산

1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 예산현액 140억 5,574만 5천원 중 138억 3,099만 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02만 4천원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합 계	**14,055,745**	**13,830,994**	**50,728**	**174,024**	**98.40%**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9,686,115	9,461,366	50,728	174,022	97.68%
보전지출	4,369,630	4,369,628	-	2	100.00%

2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 예산현액 87억 8,130만원 중 79억 8,063만 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66만 8천원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합 계	**8,781,300**	**7,980,632**	**-**	**800,668**	**90.88%**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전환사업)	3,391,937	3,380,632	-	11,305	99.67%
내부거래지출	5,389,363	4,600,000	-	789,363	85.35%

○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 53억 8,936만 3천원 중 46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지출하고 7억 8,93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전반의 자금 운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예탁금은 사업비 집행 후 남는 재원의 규모와 특별회계의 향후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예산현액 53억 8,936만 3천원과 실제 예탁액 46억원 사이에 7억 8,936만 3천원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 예산의 변경

(1)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3) 예산의 변경사용 : 1건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변경금액	사 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도농정책기획과)	보전지출	311-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62,762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동일 세부사업 내 변경사용
	보전지출	311-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 변경사용 현황은 결산서 외 별도 예산집행 자료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작성

○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보전지출 예산 6,276만 2천원을 '중앙정부 차입금'에서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변경함

(4)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5)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 명시이월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307쪽)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1건)			**150,000**	**150,000**	**86,590**	**50,728**	
도 농 정 책 기 획 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시설비	150,000	150,000	86,590	50,728	실시계획변경 인허가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진행중으로 협의 완료 후 변경 설계 가능함 (준공예정일 :'26.12.31.)

○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사업 시설비 5,072만 8천원은 실시계획 변경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가 연도 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한 것으로, 절차상 이월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와 2026년도 변경 설계 및 사업 완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출액 8,659만원과 명시이월액 5,072만 8천원을 제외한 1,268만 2천원은 계약잔액·설계변경 감액분 또는 불용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2) 사고이월 현황 : 해당없음

(3) 계속비이월 현황 : 해당없음

다. 기금

【 농업발전기금 】

1) 수입결산

○ **농업발전기금** 수입계획현액은 86억 3,469만 1천원, 징수결정액은 86억 1,919만 3천원으로 수입계획현액 대비 1,549만 8천원이 감소함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계획현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증감액(B-A)
합 계	**8,634,691**	**8,619,193**	**8,619,193**	**△15,498**
세 외 수 입	65,367	85,481	85,481	20,114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00	85,113	85,113	20,113
기 타 이자수입	367	368	368	1
그외수입	8,569,324	8,533,712	8,533,712	△35,61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25,000	2,789,387	2,789,387	△35,613
예치금회수	4,559,324	4,559,325	4,559,325	1

○ 전체적인 수납실적은 양호하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계획보다 2,011만 3천원 증가한 반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3,561만 3천원 감소하였음

-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는 민간융자금 집행 부진에 따른 예치금 증가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증가 원인의 설명이 필요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부족액은 단순한 상환시기 차이인지 연체에 따른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2) 지출결산

○ 농업발전기금 지출계획현액은 86억 3,469만 1천원으로, 86억 1,919만 3천원을 지출하였음

(단위 : 천원)

과목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증감액 (B-A)	집행률 (B/A)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8,634,691**	**8,619,193**	**△15,498**	**99.82%**
농업발전기금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3,000	11,249	△1,751	86.53%
	201-03 행사운영비	10,000	9,541	△459	95.41%
	202-03 국외업무여비	12,000	10,360	△1,640	86.33%
	301-08 민간인국외여비	60,000	37,479	△22,521	62.47%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	1,500	-	100.00%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2,000	12,000	-	100.00%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68,000	67,827	△173	99.75%
	501-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4,000,000	2,104,000	△1,896,000	52.60%
보전지출	일반예치금	2,458,191	4,365,237	1,907,046	177.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예탁금	2,000,000	2,000,000	-	100.00%

○ 농업발전기금의 전체 집행률은 99.82%이나, 이는 일반예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자금 예치·예탁 성격의 지출이 포함된 결과임

○ 기금의 핵심 사업인 민간융자금은 계획액 40억원 중 21억 4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52.6%에 그친 반면, 일반 예치금은 계획보다 19억 704만 6천원 증가한 43억 6,523만 7천원이 지출되었음

- 민간융자금으로 집행하지 못한 재원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기금운용계획 변경

○ 농업발전기금은 사무관리비 증액과 일반예치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관련 지출계획을 당초 12억 3,188만 3천원에서 24억 8,319만 1천원으로 12억 5,130만 8천원 증액하였음

○ 일반예치금은 최초 12억 688만 3천원 최종 24억 5,819만 1천원으로 12억 5,130만 8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간융자금 등 기금 고유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여유재원을 예치금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유휴자금의 안정적인 관리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책사업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예치금으로 전환된 만큼 당초 융자수요 예측과 기금 운용계획 수립이 적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단위 : 천원)

과 목		당초금액(A)	변경액(B)	증감액(C=B-A)	비율(C/A)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231,883**	**2,483,191**	**1,251,308**	**101.58%**
농업발전 기금 지원	201-01 사무 관리비	3,000	13,000	10,000	333.33%
	202-03 국외 업무여비	22,000	12,000	△10,000	△45.45%
재무활동	602-01 일반예치금	1,206,883	2,500,691	1,293,808	107.20%
	602-01 일반예치금	2,500,691	2,458,191	△42,500	△1.70%

농 업 기 술 센 터

V 농업기술센터 소관

1. 개 요

가. 세입결산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1,977만 3천원, 징수결정액은 10억 9,428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A-B)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B)	
합 계	**1,119,773**	**1,094,288**	**1,407,970**	**313,683**	**1,094,288**	-
일반회계	**1,119,773**	**1,094,288**	**1,407,970**	**313,683**	**1,094,288**	-
지도기획과	56,440	56,487	60,525	4,039	56,487	-
기술보급과	143,159	142,080	142,080	-	142,080	-
미래농업과	78,497	65,577	175,221	109,644	65,577	-
특화자원과	841,677	830,144	1,030,144	200,000	830,144	-

나. 세출결산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4억 7,850만 8천원으로, 71억 5,814만 7천원(95.72%)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217만 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818만 6천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합 계	**7,478,508**	**7,158,147**	**-**	**32,175**	**288,186**	**95.72%**
일반회계	**7,478,508**	**7,158,147**	**-**	**32,175**	**288,186**	**95.72%**
지도기획과	4,481,410	4,250,760	-	619	230,031	94.85%
기술보급과	560,212	539,893	-	4,031	16,288	96.37%
미래농업과	429,074	424,343	-	483	4,248	98.90%
특화자원과	2,007,812	1,943,151	-	27,042	37,619	96.78%

다. 성과보고서

1) 성과목표 현황

부서명	성과목표 (건)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농 업 기 술 센 터	1	4	11	0	11	0

○ **농업기술센터는** 총 11개 성과지표 중 11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음

2.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1,977만 3천원, 징수결정액은 10억 9,428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합 계	**1,119,773**	**1,094,288**	**1,094,288**	-	**100.00%**
세 외 수 입	134,492	108,958	108,958	-	100.00%
보 조 금	445,900	445,900	445,900	-	10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39,381	539,430	539,430	-	100.00%

2) 세출결산

가) 부서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합 계	**7,478,508**	**7,158,147**	**-**	**288,186**	**95.72%**
지 도 기 획 과	4,481,410	4,250,760	-	230,031	94.85%
기 술 보 급 과	560,212	539,893	-	16,288	96.37%
미 래 농 업 과	429,074	424,343	-	4,248	98.90%
특 화 자 원 과	2,007,812	1,943,151	-	37,619	96.78%

○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 부서는 세출예산 집행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향후에도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적기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예산의 변경

(1)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3)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없음

(4)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5)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 명시이월 현황 : 해당없음

(2) 사고이월 현황 : 해당없음

(3) 계속비이월 현황 : 해당없음

나.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기금 : 해당없음

문 화 체 육 관 광 국

Ⅵ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 개 요

가. 세입결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1억 9,528만 3천원, 징수결정액은 158억 1,258만 7천원으로, 157억 5,048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6,210만 6천원이 발생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A-B)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B)	
합 계	**15,195,283**	**15,812,587**	**15,768,897**	**18,416**	**15,750,480**	**62,106**
문화예술과	3,482,073	3,472,387	3,429,202	18,416	3,410,785	61,602
한글문화도시과	3,009,049	3,009,054	3,009,054	-	3,009,054	-
체육진흥과	2,817,643	2,947,829	2,947,829	-	2,947,829	-
관광진흥과	2,013,836	2,509,146	2,508,642	-	2,508,642	505
문화유산과	3,872,682	3,874,170	3,874,170	-	3,874,170	-

나. 세출결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07억 589만 1천원으로, 553억 1,415만 8천원(91.12%)을 지출하였고,

- 이월액 46억 6,524만 9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 6,169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6,478만 6천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합 계	**60,705,891**	**55,314,158**	**4,665,249**	**261,699**	**464,786**	**91.12%**
문화예술과	20,603,260	20,506,918	-	28,624	67,718	99.53%
한글문화도시과	6,097,685	6,078,674	-	-	19,011	99.69%
체육진흥과	15,234,720	14,866,898	118,197	92,097	157,528	97.59%
관광진흥과	6,422,051	6,333,592	60,000	56	28,404	98.62%
문화유산과	12,348,175	7,528,076	4,487,052	140,922	192,125	60.97%

다.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429 ~ 482쪽)

1) 성과목표 현황

실국명	성과목표(건)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문화체육관광국	1	8	23	2	21	-

○ **문화체육관광국은** 총 23개 성과지표 중 2개 지표*를 초과 달성하고 21개 지표를 달성하여 모든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음

* 국내박람회 관광홍보관 운영 횟수(목표 2회 / 실적 3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목표 60점 / 실적 89.5점) ※ 성과보고서 463쪽, 471쪽

2)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 해당 없음

2.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1억 9,528만 3천원, 징수결정액은 158억 1,258만 7천원으로, 157억 5,048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6,210만 6천원이 발생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B/A)
합 계	**15,195,283**	**15,812,587**	**15,750,480**	**62,106**	**99.61%**
세 외 수 입	2,937,943	3,011,777	2,949,670	62,106	97.94%
보 조 금	8,950,057	8,950,057	8,950,057	-	10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307,283	3,850,753	3,850,753	-	100.00%

○ 주요 미수납 내역

< 문화예술과 세입 미수납 내역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합 계	**466,434**	**561,311**	**499,709**	**61,602**	**89.02%**
212-08 주차요금수입	1,746	2,252	1,958	295	86.94%
212-09 기타사용료	146,162	207,902	206,638	1,264	99.39%
216-03 기타이자수입	60,276	58,259	57,822	437	99.25%
223-03 위탁비반환수입	254,050	289,198	230,091	59,106	79.56%
231-01 과징금	4,200	3,700	3,200	500	86.49%

- **(문화예술과**결산서 402쪽**)** 미수납액 총 6,160만 2천원 중 위탁비반환수입이 5,910만 6천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5.95%를 차지함

- 이는 2024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보조단체의 사업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5,500만원) 및 지연이자(410만 6천원) 반환금으로,

- 반환명령에도 불구하고 미납되어 현재 강제징수를 위해 세원관리과에 인계된 상태로, 향후 체납액의 조속한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과 세입 미수납 내역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212-09 기타사용료	77,130	76,955	76,450	505	99.34%

- **(관광진흥과**결산서 407쪽**)** 세입 미수납액은 기타사용료 50만 5천원으로, 시티투어버스 운영수입금이며, 수탁기관의 세입 처리 지연으로 회계연도 마감 후 납부된 것임

- 향후 운영수입금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수입금 관리 및 납부 절차를 점검하여, 수입금 납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 세출결산

가) 주요 집행 부진사업 현황 * 집행률 70% 이하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문화예술과	문화정책추진❶	30,732	20,204	-	10,528	65.74%
	한예종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	1,200	737	-	463	61.42%
	문화산업 관리❷	8,730	5,470	-	3,260	62.66%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 기반 글로벌 인재 정주지원❸	19,000	0	-	19,000	0.00%
체육진흥과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200,000	81,803	118,197	-	40.90%
관광진흥과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60,000	0	60,000	-	0.00%
문화유산과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 (전환사업)	4,393,560	910,454	3,483,106	-	20.72%
	장욱진문화마을 조성사업	1,000,000	18,050	981,950	-	1.81%

※ 이월액이 발생한 사업은 후술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서 검토함

❶ (문화예술과) 문화정책추진 (결산서 468쪽)

○ 예산현액 3,073만 2천원 중 2,020만 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65.74%로, 본 사업은 기본·시행 계획 수립 자문 및 주요 시책 추진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가 주목적임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문학진흥위원회

- 집행잔액 1,052만 8천원 중 사무관리비가 944만 4천원으로 잔액의 89.7%를 차지함

○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유사한 집행률이 지속된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❷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리** (결산서 469쪽)

○ 본 사업은 건전한 문화산업(게임,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등) 육성을 위해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 종사자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73만원 중 547만원을 지출하여 62.66%의 집행률을 나타냄

- 집행잔액 326만원 중 국내여비가 212만 4천원으로 집행잔액의 65.15%를 차지함

○ 현장점검 및 단속 지원 등 관련 업무의 실제 출장 수요와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❸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 기반 글로벌 인재 정주지원*** (결산서 471쪽)

○ 행사운영비 1,90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사업 내용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한글축제를 통해 추진됨에 따라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

○ 기존 행사와의 중복을 고려하여 사업을 미추진한 것이나, 신규사업 편성 당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면밀히 실시하고,

-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한 예산 조정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 사업개요 >

▫ **(사업구분)** 신규사업 / 부담금 등(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 **(사업내용)** 한글 놀이·교육, 과거·현재를 결합한 콘텐츠 통한 참여형 문화교육 운영
▫ **(사 업 비)** 1,900만원(행사운영비)
▫ **(산출기초)** 과거시험 운영 물품구입 100만원, 의상대여 198만원, 한글공연 505만원, 한글체험 운영 274만원, 부대시설 413만원 등

나) 예산의 변경

(1) 예산의 이용 : 해당 없음

(2) 예산의 전용 : 해당 없음

(3) 예산의 변경사용 : 1건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변경금액		사 유
			감액	증액	
문화유산과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전환사업)	401-01 시설비	116,200		(계속비이월예산) 건축공사 감리방식 변경(비상주→상주)에 따른 배치인원·횟수 증가 및 '25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용역비 증가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전환사업)	401-02 감리비		116,200	

※ 변경사용 현황은 결산서 외 별도 예산집행 자료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작성

○ **(문화유산과)** 건축공사 감리방식 변경 및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시설비 1억 1,62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음

- 감리방식을 비상주에서 상주로 전환하고 관련 용역비를 증액한 것은 견실한 시공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타당해 보임

- 다만, 건축공사의 감리형태 변경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 변동 요인이 발생한 만큼 향후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 시 공사 여건과 제반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공정별 소요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 감리비 증액에 따라 시설비를 감액한 만큼, 향후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별 예산 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예산의 이체 : 6건 (결산서 850, 851, 853쪽)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체 금액	사 유
합 계(6건)			**6,070,043**	
문화예술과 →한글문화도시과	한글진흥 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3,410	조직개편('25. 3. 14.)에 따른 예산 이체
		202-01 국내여비	3,6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0	
	문화도시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6,200	
		308-13 공기관등위탁사업비	6,000,000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873	
		202-01 국내여비	1270	
체육진흥과 →한글문화도시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968	
		202-01 국내여비	346	
정원도시과 →한글문화도시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3,235	
산림자원과 →한글문화도시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41	

○ 시 조직개편('25. 3. 14.)에 따라, 이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과 및 체육진흥과 등에서 한글문화도시과로 총 6개 세부사업, 60억 7,004만 3천원의 예산이 이체됨

-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60억 원의 공기관등 위탁사업비를 비롯하여 대규모 예산이 이관된 만큼, 부서 변경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해되거나 집행잔액 관리 및 위탁비 정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5) 예비비 지출 : 2건 (결산서 864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총 2건			140,000	139,668	332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 확충❶	305-01 배상금등	120,000	120,000	-	무연고 유골 처리 및 봉안료 청구 소송결과에 따른 조정금액 지급
체육진흥과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전환사업)❷	401-01 시설비	20,000	19,668	332	야외 공공체육시설(풋살,축구, 농구장) 특별점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

❶ **(체육진흥과) 무연고 유골 처리 등 소송 조정금**(1억 2,000만원)

○ 사법부의 소송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의무 지출로,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예비비 사용 요건(지출의 긴급성·불가피성)에 부합하나,

- 향후 소송 진행 단계별 리스크를 예산 부서와 적시에 공유하여 추경 예산 확보 등 사전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❷ **(체육진흥과) 야외 공공체육시설 긴급 보수**(1,966만 8천원)

○ 특별점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로서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소규모 시설 보수 소요의 경우 향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본예산에 적정 수준의 유지보수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비비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함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 명시이월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284, 285쪽)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3건)			**1,200,000**	**218,050**	**99,853**	**1,090,712**	
체육진흥과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401-01 시설비	200,000	200,000	81,803	108,762	설계용역 완료일 미도래
문화유산과	장욱진문화마을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995,000	18,050	18,050	976,950	'25~'26년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9월 추경에 편성되어 설계비 및 공사비 이월 후 '26년 집행 필요
	장욱진문화마을 조성사업	401-03 시설부대비	5,000			5,000	

❶ (체육진흥과)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연내 용역 완료가 어려워, 시설비 1억 876만 2천원을 명시이월하고 943만 5천원을 사고이월함

* **건축물 구조 방식 변경**(철근콘크리트조→**경량철골조**), **연면적 조정**(1,000㎡→**882㎡**)

○ 이월된 시설비와 관련한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금년 8월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약 48억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 향후 사업비 부족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❷ (문화유산과) 장욱진문화마을 조성사업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5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2개년 사업(2025~2026년)으로, 예산현액 10억원 중 9억 8,195만원(시설비 9억 7,695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명시이월함

-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 현재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운영 및 브랜딩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송길 전망대 등 문화재생 거점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임

- 또한, 연동문화발전소를 중심으로 입주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시민 참여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욱진 문화마을 축제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추진할 계획임

○ 향후 이월된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장욱진 화백의 문화자원과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예술인의 지속적인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고이월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284, 285쪽)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3건)			**340,000**	**330,996**	**130,803**	**91,431**	
체육 진흥과	북부권 시니어 친화형 국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❶	401-01 시설비	200,000	200,000	81,803	9,435	설계용역 중지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1차분) 중지 및 연내집행 불가
관광 진흥과	세종권 관광 개발계획 수립❷	207-01 연구 용역비	60,000	60,000	-	60,000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문체부)과 연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문체부, 8월배포)」 일정에 맞춰 지침 배포 후 사업 시행하여 사업 추진기간 부족,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절차 중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진행중)
문화 유산과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종합 정비계획 수립❸	207-01 연구 용역비	80,000	70,996	49,000	21,996	비암사 소유자의 변경(10.27)에 따른 내용 검토 및 의견 협의·반영 검토 기간 소요, 각종 행정절차(국가유산청 건축분과 위원회 검토·심의 등)로 인하여 용역 일시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함

❶ (체육진흥과)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1차분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시설비 943만 5천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❷ (관광진흥과)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 제8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2027~2031/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 「제8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문체부, ‘25.8월)에 따른 용역 추진을 위해 6,0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이며, ’25년 12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 ’25년 8월 관련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12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사고이월된 점을 고려할 때, 계약 체결이 늦어진 사유와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연계한 제8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2027～2031) 수립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총사업비)** 1억 6,570만원(‘25년 6,000만원, ’26년 1억 570만원)
▫ **(주요내용)** 관광개발 기본방향, 관광자원 보호·개발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 법정계획 수립

❸ (문화유산과)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종합정비계획 수립

○ 비암사 소유자 변경(‘25.10.27.)에 따른 협의와 국가유산청 심의 등으로 연내 용역 완료가 어려워 2,199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소유자 변경 및 심의에 따른 이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월된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및 용역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비암사 극락보전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사업인 만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계속비이월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285쪽)

(단위 :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문화 유산과	장욱진생가 기념관 건립 (전환사업)	합계	4,393,561	4,270,089	910,454	3,483,106	
		401-01 시설비	4,051,324	3,943,727	701,985	3,349,338	사업완료기간(2027년)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 이월
		401-02 감리비	331,200	316,862	198,969	132,231	
		401-03 시설부대비	11,037	9,500	9,500	1,537	

○ **(문화유산과)**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사업은 2027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 9,356만 1천원 중 34억 8,310만 6천원을 계속비이월하였음

- 계속비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념관 건축공사를 추진 중이며 전시실·수장고 등 주요시설의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장욱진 화백의 작품 및 자료 확보를 위한 유족·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 중이며, 기념관 개관에 필요한 조례 제정,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 기반 마련도 추진할 계획임

- 2027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건축공사와 함께 작품·자료 확보, 전시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등 개관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결산검사 의견서

□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용 필요(한글문화도시과 등 / 결산검사 의견서 23쪽)

(1) 문제점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한글문화도시과	한글문화 기반 글로벌 인재 정주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9,000	-	19,000

○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예산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편성·집행되어야 하나,

○ 전액 미집행으로 불용처리됨으로써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2)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해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계획 및 집행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전 부서) 편성된 예산은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사업 목적 달성 및 사업 효과 극대화에 노력하는 한편,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현안 사업에 재원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나. 특별회계 : 해당 없음

다. 기금 : 해당 없음

시 설 관 리 사 업 소

Ⅶ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 개 요

가. 세입결산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7억 4,589만 3천원, 징수결정액 45억 2,547만 6천원으로, 45억 2,033만원을 수납하여 514만 5천원 미수납액이 발생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A-B)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B)	
합 계	**4,745,893**	**4,525,476**	**4,643,646**	**123,316**	**4,520,330**	**5,145**
일반회계	**4,745,893**	**4,525,476**	**4,643,646**	**123,316**	**4,520,330**	**5,145**
시설관리과	4,211,973	4,086,336	4,091,090	4,984	4,086,106	230
녹지관리과	533,920	439,140	552,556	118,332	434,224	4,915

나. 세출결산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00억 3,743만 5천원으로, 294억 9,379만 6천원(98.19%)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4,363만 9천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합 계	**30,037,435**	**29,493,796**	-	-	**543,639**	**98.19%**
일반회계	**30,037,435**	**29,493,796**	-	-	**543,639**	**98.19%**
시설관리과	16,979,757	16,715,759	-	-	263,998	98.45%
녹지관리과	13,057,678	12,778,037	-	-	279,641	97.86%

다. 성과보고서

1) 성과목표 현황

부서명	성과목표 (건)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시설관리사업소	1	7	12	1	9	2

2)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성과보고서 1021~1024쪽)

부 서	성과지표명 (단위)	측정산식 (방법)	목표대비 달 성 률	'24년 달성성과	'25년 달성성과
시설관리과	체육시설 환경개선 실적(%)	[(읍면체육시설운영 집행액/읍면체육시설운영총예산액) *0.5+(생활권체육시설 운영 집행액/생활권체육시설 운영 총예산액)*0.5]*100	목표	100	100
			실적	107	99.0
			달성률(%)	107.0	99.0
	복합청사시설 이용 만족도(점)[1]	(5개 항목의 환산 총점수/전체 설문응답자수)/5	목표	75	80
			실적	89	78.4
			달성률(%)	118.7	98.0

○ 체육시설 환경개선실적은 계약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산 집행률이 목표에 미달하였으며, 복합청사시설 이용 만족도는 설문조사 결과 이용 절차 편리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1) 소관부서(복지정책과) 변경에 따라 2026년도 성과지표에서 제외

2.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7억 4,589만 3천원, 징수결정액 45억 2,547만 6천원으로, 45억 2,033만원을 수납하여 514만 5천원 미수납액이 발생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합 계	**4,745,893**	**4,525,476**	**4,520,330**	**5,145**	**99.89%**
세 외 수 입	4,187,966	3,928,902	3,923,756	5,145	99.87%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57,927	596,574	596,574	-	100.00%

○ 주요 미수납 내역 (결산서 420쪽)

- **(녹지관리과)**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491만 5천원 중 369만 8천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2]에 따른 회계처리가 완료되었음

- 나머지 체납액 121만 7천원은 세원관리과로 인계하여 징수 관리 중이며, 지속적인 징수관리를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A-B)	징수율 (B/A)
211-02 공유재산임대료	200,300	91,209	86,293	4,915	94.61%

2) 회계과-34639(2025. 10. 01.)「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 알림」등

2) 세출결산

가) 부서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집행률 (B/A)
합 계	**30,037,435**	**29,493,796**	**-**	**543,639**	**98.19%**
시설관리과	16,979,757	16,715,759	-	263,998	98.45%
녹지관리과	13,057,678	12,778,037	-	279,641	97.86%

○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과 98.45%, 녹지관리과 97.86%로 소관 부서 모두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세부사업별로도 집행률 70% 미만의 부진사업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나) 예산의 변경

(1)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2)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3)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없음

(4) 예산의 이체 : 38건 (결산서 854쪽)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체 금액	사 유
총 38건			11,215,714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사무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826,603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사무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5,2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사무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201-02 공공운영비	481,508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사무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202-01 국내여비	10,53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사무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305-01 배상금등	2,0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읍면체육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85,98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읍면체육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16,2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읍면체육시설 운영	206-01 재료비	10,0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읍면체육시설 운영	401-01 시설비	394,28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읍면체육시설 운영	401-03 시설부대비	943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체 금액	사 유
총 38건			**11,215,714**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야외수영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512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야외수영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8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야외수영장 운영	401-01 시설비	20,0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생활권체육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9,3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생활권체육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41,782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생활권체육시설 운영	206-01 재료비	8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생활권체육시설 운영	401-01 시설비	116,5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생활권체육시설 운영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9,2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금강 파크골프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5,64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금강 파크골프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5,258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금강 파크골프장 운영	401-01 시설비	129,45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금강 파크골프장 운영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22,0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반다비빙상장 운영 및 관리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30,750	(사고이월예산)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위탁체육시설 운영(전환사업)	307-05 민간위탁금	3,249,24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위탁체육시설 운영(전환사업)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593,297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체 금액	사 유
총 38건			**11,215,714**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위탁체육시설 운영(전환사업)	403-02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51,403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위탁체육시설 운영(전환사업)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351,6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공공체육시설 피해복구 사업	401-01 시설비	527,177	(사고이월예산)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0,68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3,5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154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6,832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24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3,775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시설관리과	보전지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2,200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공공건축1팀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835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공공건축1팀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271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체육시설과 →공공건축1팀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271	조직개편('25.10.10.)에 따른 예산 이체

○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이체는 조직개편('25.10.10.)에 따라 체육시설과 소관 업무가 시설관리과 및 공공건축안전사업소 공공건축1팀으로 이관되면서 총 38건, 112억 1,571만 4천원이 이체됨

-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일부 예산이체의 사유가 단순히 '조직개편'으로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업무 이관 내용과 이체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음

- 향후 결산자료 작성 시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이관 내용과 이체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예산이체의 경위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 명시이월 현황 : 해당없음

(2) 사고이월 현황 : 해당없음

(3) 계속비이월 현황 : 해당없음

3) 결산검사 의견서

가) 예산이체 사유의 정확한 명시 필요(결산검사 의견서 32쪽)

(1) 문제점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이체금액	이체사유
소계	**등 29건**		**11,187,153**	
체육시설과	사무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6,603	조직개편
시설관리과	사무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체육시설과	사무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25,200	조직개편
시설관리과	사무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 체육시설과에서 시설관리과로 「사무환경 조성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억 2,660만 3천원과 사무관리비 2,520만원 등 총 8억 5,180만 3천원을 이체하였으나, 이체사유가 단순히 ‘조직개편’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이체 경위 및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무권한의 변동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인 만큼, 이체사유를 불분명하게 기재할 경우 결산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업무 이관 내용과 예산이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결산자료 작성 시 예산이체 사유를 단순히 ‘조직개편’으로 기재하기보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내용과 이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이체의 경위와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기금 : 해당없음